

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은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「악취방지법」 개정시행에 따라 악취실태조사,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등의 관련 조항을 수정·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□ 특히 사업자의 책무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생활악취의 저감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 - 안 제2조에 악취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
 - 안 제4조에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,
 - 안 제5조~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,
 - 안 제8조에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수정,
 - 안 제9조에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,
 - 안 제10조~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,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,
 - 안 제13조에 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,
 - 안 제14조에 기타 상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